

임지구분	임기내	사업주체	김천시
신규여부	계속사업	중앙정부 지원	
예산구분	예산	사업이행도(진도율)	정상추진
주관부서	사회복지과	협업부서	
공약실명제	과장 임재춘(6160), 팀장 윤영규(6270), 담당자 박인호(6280)		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김천시 응명동 212번지(구 응명초 부지)
- 규모 : 부지면적 8,774㎡(2,654평),
 - 지상1층 지상3층, 철근콘크리트조, 연면적 3,345.59㎡(1,012평)
- 사업비 : 130억원(도 10억원, 시비 120억원)
- 사업기간 : 2018년 ~ 2024년
- 주요시설

층별	시 설	면적	비고
계	장애인단체 사무실(12)	3,345.59㎡	1,012평
지하1층	기계실, 전기실, 물탱크실	137.86㎡	41평
지상1층	장애인단체 사무실(4), 식당	1,095.25㎡	331평
지상2층	장애인단체 사무실(5)	1,056.24㎡	320평
지상3층	장애인단체 사무실(3), 다목적강당	1,056.24㎡	320평

- 주차장 : 80대 (125대정도 가능)

□ **추진실적**

- 2018. 9월 : 건립 기본계획 수립
- 2020. 5월 :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
- 2020. 8월 : 부지 매입
- 2021. 8월 ~ 2022. 11월 : 기본 및 실시설계
- 2022. 2월 : 응명초등학교 철거 완료
- 2022. 5월 :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완료
- 2022. 7월 :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
- 2022. 12월 : 공사 착공(현 공정율 70%)

□ **연차별 추진실적/계획**

연도	주요사업내용	비고
2018	· 건립 기본 계획 수립	
2019	· 부지 선정	
2020	· 주민 설명회 개최 ·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· 부지 매입	
2021	· 기본 및 실시용역 시행	
2022	· 응명초등학교 철거 완료 ·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·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	
2023	· 공사 시행	
2024	· 공사 준공 및 개관식 · 장애인 단체 입주	

□ 연차별 투자수요

(단위: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 (A+B+C)	기투자 (A)	임기 내 투자계획(B)					2026 하반기 이후 (C)
			소계	2022	2023	2024	2025	
계	13,000	4,200	8,800	2,007	4,793	2,000		
국비								
도비	1,000					1,000		
시비	12,000	4,200	7,800	2,007	4,793	1,000		
민자	-	-	-	-	-	-	-	-
기타	-	-	-	-	-	-	-	-

□ 위치도 및 사진대지





□ 기대효과

-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
- 장애인단체 간 상호교류 및 협업을 통해 통합 네트워크 구축
- 분산된 장애인 복지사업의 집중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중복지원 방지에 따른 예산 절감
- 장애인 복지 거점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

□ 변경사항 : 해당없음

□ 이행내용 : **정상추진**

- 이행지표 :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 2회, 관련 조례제정 1회



< 2022년 착공식 및 간담회 >



< 2023년 장애인단체협의회 간담회 >

○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(2023.11.16.)

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체 자치법규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최근 제·개정 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현황 교육자치법규 주요정보 Q

☰ 목록보기 ☞ 연혁 ☞ 제·개정이유 ☞ 2단배고 ☞ 신규배고 ☞ 유사법규비교 ☞ 용어사전 ☞ 주소복사 ☞ 본문내검색 ☞ 저장 ☞ 인쇄

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본문 -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위치)
- 제3조(시설)
- 제4조(운영범위)
- 제5조(사용대상)
- 제6조(사용허가)
- 제7조(사용의 제한)
- 제8조(관과·운영 위탁)
- 제9조(수익자의 의무)
- 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)
- 제11조(지도감독)
- 제12조(준용)
- 제13조(시행규칙)

부칙 +

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3.11.16]
(제정) 2023.11.16 조례 제1549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사회복지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420-616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김천시 장애인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의 위치는 김천시 동병동 212(대산동)에 둔다.

제3조(시설)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무실, 다목적 강당, 식당
2.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

제4조(운영범위)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.

1.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2.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
3.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참조 제공
4.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
5.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